

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4. 2. 27(금)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2월 11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2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8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5차(2004. 2. 26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- 2000. 10. 1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이법에서 사용·적용되는 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“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 명칭을 “이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로 함.
- 제3조제2항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”로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. 10. 1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이법에서 사용·적용되는 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 안으로써
- 현행 「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」 명칭을 「이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」로 변경하였고,
- 제3조 제2항 중 「생활보호대상자」를 「주민기초생활수급자」로 개정하려는 것이며,
- 제6조에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보증물건 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3항을 신설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